■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신설 2023. 10. 19.>

고령운전자 표지 및 제작 방법 등(제10조의2제2항 관련)

1. 고령운전자 표지



2. 제작 방법

가. 바탕은 하늘색, 글씨는 흰색으로 한다.

나. 앞면은 반사지로 제작하고, 뒷면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고무자석으로 제작한다.

다. 글씨체는 문체부 제목 돋움체로 한다.

라. 표지 규격 및 글씨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문구 등을 삽입할 수 있다.

3. 부착 장소

차의 뒷면 중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한다.